**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5월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7.

3. 정정사항: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 기재 추가

| 항목 | 정정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 --- | --- | --- |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 기재 추가 | - | 11.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블랙록 글로벌 다이나믹 주식 펀드, 블랙록 시스테마틱 글로벌 주식 배당 프리미엄 펀드, 블랙록 ESG 멀티에셋 펀드,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블랙록 유로 회사채 펀드, 블랙록 유로 채권 펀드,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 블랙록 글로벌 정부채 펀드, 블랙록 이머징마켓 현지통화 채권 펀드, 블랙록 미국달러 채권 펀드, 블랙록 미국 정부 모기지 펀드, 블랙록 월드 채권 펀드, 블랙록 유로 중기채권 펀드, 블랙록 미국달러 중기채권 펀드, 블랙록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 블랙록 글로벌 회사채 펀드, 블랙록 다이나믹 하이 인컴 펀드, 블랙록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 기재 추가 |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블랙록 글로벌 다이나믹 주식 펀드, 블랙록 시스테마틱 글로벌 주식 배당 프리미엄 펀드, 블랙록 ESG 멀티에셋 펀드,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블랙록 유로 회사채 펀드, 블랙록 유로 채권 펀드,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 블랙록 글로벌 정부채 펀드, 블랙록 이머징마켓 현지통화 채권 펀드, 블랙록 미국달러 채권 펀드, 블랙록 미국 정부 모기지 펀드, 블랙록 월드 채권 펀드, 블랙록 유로 중기채권 펀드, 블랙록 미국달러 중기채권 펀드, 블랙록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 블랙록 글로벌 회사채 펀드, 블랙록 다이나믹 하이 인컴 펀드, 블랙록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 기재 추가 | - | **고난도투자상품 위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일부 펀드들의 경우 파생거래를 하며, 대한민국의 법규에 따라 산정한 파생거래의 위험평가액이 2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 기재 추가 |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  **(1) 청약철회권**  국내판매대행회사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투자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은 제외),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서면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한 투자자는 그 사실을 국내판매대행회사에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은 제외)로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국내판매대행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투자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청약 철회권은 일정 기간에만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펀드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2) 숙려기간**  국내판매대행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 또는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목적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받고 펀드의 청약 또는 주문을 한 투자자에게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내판매대행회사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에게 청약의 의사가 확정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계약체결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